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04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이건태·김동아·김문수

김한규 • 박지원 • 송재봉

양문석 • 이개호 • 장종태

조인철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 러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 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가 제1항의 구속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한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소한 때로부터 7일이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제209조 중 "제71조"를 "제70조제4항, 제71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③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고인		
	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		
	는 행위가 제1항의 구속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생	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		
	태에서 기소한 경우 그 구속영		
	장은 기소한 때로부터 7일이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209조(준용규정)		
<u>제71조</u> , 제75조, 제81조제1항	<u>제70조제4항, 제71조</u>		
본문 •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			
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			
(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